고시

고시제 71 호

경무 181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전화번호 463)	전결규정 조 항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72. 5. 31		
시행일자	72. 6. 1		
보존년한	영구.		
보조기관	과장		협조: 법무과장 (고시안결재)
	계장		운수관리과장
기안책임자	경위 김형진		
경유 수신 참조	각안 참조.	발신: 시장	통제: 1972 5. 31 서울특별시 통제관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제한 고시 제정.		

제1안

수신 내부결재

1. 내무부 교통 2038-9092 (72. 5. 19)에 관련입니다.

2. 자동오도바이 및 운반용 3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여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을 기하고저 도로교통법 제62에 의거, 별안과 같은 차량통행제한에 관한 서울시고시를 제정 시행코저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고시안 1부.

제2안

경무 181 —

정서 | 관인 | 발송

공용서식1-2(갑)
1967. 4. 4. 승인

190㎜×268㎜(1급인쇄용지70g/㎡)
조달청 (500,000매 인쇄)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통행제한 고시 제정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제한에 관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 "보고" "통보" "하달"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1부. 끝.

수신처 내무부 각시도지사, 계 3, (5부), 1-34, 순찰대

발무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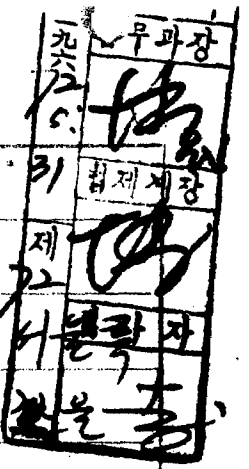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고속도로 차량 통행 제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고속도로 상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72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다 음

1. 통행 제한 구간

서울특별시 관내의 고속도로 전구간

가. 경인고속도로 (영등포구 양평동3가 노량진부터 - 영등포구 신월동 시계까지)

나. 경부고속도로 (성동구 신사동 고속도로 입구부터 - 성동구 수원동 시계까지)

2. 통행 제한 대상 차량

가. 2톤 차 오토바이

나. 용달용 3륜차 (경3륜화물자동차)

3. 시행 기일

이 고시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내 무 부

고통 2038 - 9092 1972. 5. 19.

수신 각시도지사

참조 경찰국장

제목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시달

고속도로상의 위험방지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고속도로상에 있어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저 고시안을 시달하니 각관은 수명 즉시 각 해당시도의 고시를 제정 1972.6.1.부터 시행하는데 착오없도록 조치하고 고시 내용을 즉보할것.

(해당시도 관할 구간을 명시할것)

1. 고시 제정 근거

도로 교통법 제 6조 1항

2. 제정내용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속도로상의 위험방지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상에는 (경부간 ,경인간, 영동선, 호남선) 2륜차 오토바이및 용달용 3륜차(경운기,리어카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고시임.

첨부 1. 고시안 1부.

2.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실천계획 1부. 끝

권한의 위임을 받아

치 안 국 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국장 정 석 모 전결

수신처: 나 1 - 11